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2024. 5. 14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추진 방향	1
II.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3
III. 12대 정책과제 추진계획	33
IV. 과제별 향후 일정	43

I. 추진 방향

◆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시범사업 등 20대 정책과제 발굴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 국민 관심·과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가시적 성과 조속히 창출
-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되, 정기적 상황 점검 및 실태조사(연말)를 통해 대응 현황을 체계적 진단

① 사회적 공론화 지원

□ 각계각층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높은 포럼·세미나,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상시 운영

* 쟁점별로 국내·외 동향 및 부처별 주요 정책, 참고 문헌 등을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사회적 공론화 추진 일정(안) >

5월 ~ 6월	7월 ~ 8월	9월 ~ 10월	11월 ~ 12월
▶ AI 안전·신뢰	▶ 디지털 접근성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공론화 결과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부처에서 정책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형태로 정보 제공

② 정책연구·자문 및 글로벌 협력

□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소사이터티** 등을 통해 쟁점이 첨예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정책연구·자문 추진

* 학계, 기업, 전문가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 기술·공학 뿐 아니라 경제,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 주요석학 및 전문가 참여

< 2024년 정책연구 추진과제 >

쟁점명	주요 연구사항
디지털 권리	▲ 디지털 권리 논의 동향 ▲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권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핵심 연결되지 않을 권리	▲ 해외 입법동향 조사 ▲ 국내 노동법제 기반 규율방식 검토 ▲ 노사 의견 및 실태조사 등
핵심 비대면 진료	▲ 해외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조사 ▲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검토 등
핵심 사이버 범죄	▲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보호 선진사례 조사 ▲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등

- ☐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 ‘韓-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신설(‘24.上),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의제 반영 등을 통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 한국과 OECD가 공동 신설하는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로, OECD 회원국과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디지털 질서 정립 모범사례를 국제사회 공유

- 글로벌 규범 논의와의 정합성이 필요하거나, 해외 주요국·기관의
선도사례 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연구 병행

* ① 8대 핵심과제 별 美, EU, 英 등 주요국 법제 및 정책추진 현황 분석(加 UBC)
② 디지털 인권(Digital Human Rights)에 관한 선도적 연구(英 옥스퍼드)

③ 쟁점 대응현황 진단 및 실태조사

- ☐ (정기점검) 부처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고,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새로운 디지털 정립 관계부처 회의(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공유

- ☐ (실태진단)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성과 및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발굴을 위한 실태진단 실시(연말)

- 쟁점별 국민들의 인식 및 체감도·중요도 변화 조사 병행

- ☐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 정부, 기업, 국민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

* 디지털 혁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등 객관적 지표와 디지털 심화 대응에 대한
분야별 국민 만족도, 전문가 평가점수, 공무원 인식도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개발

Ⅱ.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① 선도적인 AI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 ▶ AI 기본법 제정과 고위험 AI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 ▶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 논의 주도
- ▶ 아태지역을 대표할 AI 안전성 검증·연구 전담조직 설치



AI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 「디지털 권리장전」 제17조(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②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쉼주기 대응체계 구축

- ▶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 ▶ 딥페이크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대응
- ▶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확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③ 조속한 AI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AI 기반 창작산업 활성화 지원

- ▶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
- ▶ AI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 ▶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 마련



AI
개발·활용
저작권
제도 정비

※ 「디지털 권리장전」 제13조(디지털자산의 보호)

④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 확충

- ▶ 디지털 재난·안전 분야의 통합법을 제정
- ▶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
- ▶ AI 보안 등 K-사이버보안 기술 R&D 집중투자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
범죄 대응

※ 「디지털 권리장전」 제18조(디지털 위협 대응)

5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

- ▶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
- ▶ 계층·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 제공 강화
- ▶ 취약계층 대상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 확대



디지털
접근성 제고,
대체수단
확보

※ 「디지털 권리장전」 제6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6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 및 의료산업 혁신 지원

-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 마련
- ▶ 규제특례를 받은 혁신기술의 비대면 진료 연계 강화
- ▶ 처방전 위변조 방지,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 개선방안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 「디지털 권리장전」 제22조(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제23조(디지털 규제개선)

7 디지털 심화 시대, 일할 권리와 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문화 조성

- ▶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본격 공론화
- ▶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추진·확산
- ▶ 스마트쉼 센터를 통해 디지털 과의존 업무 휴식권 교육·상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디지털 권리장전」 제11조(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8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지원

- ▶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제도화
-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 ▶ 잊힐 권리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심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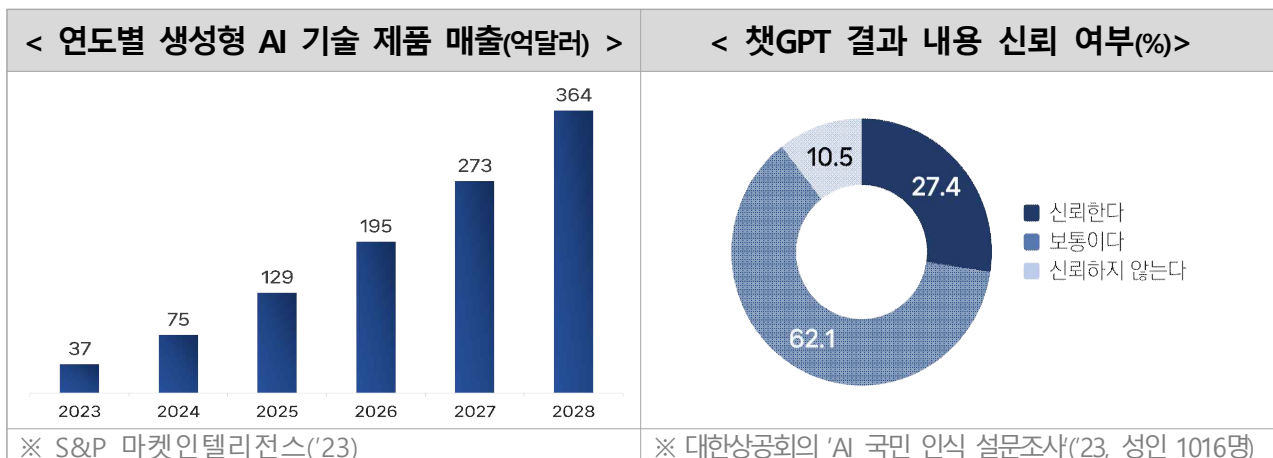


잊힐 권리
보장

※ 「디지털 권리장전」 제9조(개인정보의 접근통제), 제19조(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1-1 쟁점 분석

- **(현황)** 챗GPT 출시('22.11)가 촉발한 AI 열풍으로 인해 일상 모든 접점에서의 AI 적용 확산,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 등 초래
 - 다만, AI 자체의 기술적 특성과 한계(불투명성, 편향성 등), 오·남용 및 악용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공존
 - ※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AI 석학 등 1,000여명은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고 그 사이 안전 프로토콜을 만들자고 촉구('23.4)
 -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개발·활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AI를 신뢰하는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 대두



- **(해외동향)** 세계 각국은 글로벌 표준에 자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고자 경쟁적으로 AI 규범 정립에 노력 중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주요 AI 기업과 안전·보안·신뢰 관련 원칙에 대한 자율적 이행을 약속('23.7),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명령' 발표('23.10)
EU	▶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의 의무 조치 및 규제 조항을 다수 포함하는 내용의 「AI 법」 제정안 의회통과('24.3)
영국	▶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AI의 혜택 확대, 위험 대응, 글로벌 협력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블레츨리 선언) 발표 주도('23.11)
G7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23.5~)'에 따른 첨단 AI 국제 지침과 이를 일부 구체화한 행동강령(AI 안전·보안·신뢰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발표('23.10)

1-2 정책 대응 진단

- **(정책)** 'AI 국가전략'('19.12) 수립으로 AI 안전·신뢰·윤리 정책 추진 본격화
 - 이후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12),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21.5) 등을 통해 구체적 과제 도출
 - *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라 제도 정비 총 30개 과제 중 19개 완료, 동 추진계획에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를 포괄해 연속성 있게 추진
 - 생성형 AI 등장에 대응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23.4),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23.8), 'AI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23.10) 등 발표
- **(법·제도)** AI 개발과 이용, 각 활용 영역별로 법률 제·개정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산업 발전과 신뢰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일반	▶ AI 개발·활용 등 쉼단계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AI 윤리기준' 정립('20)
분야별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21), '교육분야 AI 윤리원칙'('22) 수립 등
AI 개발	▶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22) 및 'AI 윤리 자율점검표'('23) 배포,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 구축('23), 'AI 신뢰성 단체표준' 제정('23) 등
AI 이용	▶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발표('2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 제37조의2 신설)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

- **(기술)** AI의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소통능력 고도화,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기초연구개발사업 추진('22~'24, 1,321억원)
 - ※ 딥러닝 한계(소량 데이터 학습, 실세계 변화 적응), 소통 한계(상식기반 추론, 인간 (AI)-AI 소통), 신뢰성 부족(설명가능한 AI, 편향성 완화 등) 극복

분석·진단 결과

- 안내서/검인증체계/윤리준칙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실행력 있는 AI 관련 법체계** 필요
-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AI를 설계하고 사회 전반의 AI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AI 거버넌스의 선제적 구축 및 관련 기술력 확보**가 요구

선도적인 AI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디지털 권리장전」 제17조(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법 체계 확립

- (AI 기본법 제정) 「AI법」 제정 통해 AI 신뢰 확보 및 산업 발전 조화(‘24)
 - 「AI법」 내에 총 9개 분야*를 ‘고위험영역 AI’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 등 포함
 - * △에너지·식수 △보건의료 △의료기기 △핵물질·원자력시설 △수사·체포 등
 - 「AI법」의 세부 지침으로서 고위험 영역에 속하는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24.12)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AI 서비스 분쟁조정,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담은 법률 마련(‘24)
- (AI 사고 책임 연구) 의료 AI·자율주행차 사고 등 AI 기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주체, 입증책임 등 미래 법적쟁점 발굴(‘24.下)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체계 등 법률 개정 검토(‘26)
 - ※ EU의 경우 ‘AI 책임 지침안’(‘22.9 발의) 마련을 통해 AI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 피해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여 손해배상 요구 가능

② AI 규범과 AI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논의 주도

- (AI 서울 정상회의) AI의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 건인 방안 등에 대한 세계 주요국 정상, 빅테크 CEO 등의 논의 진행(‘24.5.21~22)
 -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24.5.22)
 - ※ 제1회 AI 안전성 정상회의는 영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 28개국과 EU가 ‘블레츨리 선언’을 채택하고 AI가 유발하는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 (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파리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할 OECD 내 한국 주도 상설 회의체 신설(‘24.上)
* 대통령은 유럽 최고 석학과 함께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근간으로서 디지털 윤리규범의 기본원칙 제시 및 UN 산하 국제기구 설립 제안(‘23.6)
- (AI 글로벌 거버넌스) 우리나라 주도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UN AI 자문기구 참여 및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의제 반영 등 노력

③ AI 신뢰성·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

- (AI 한계 극복 R&D) 편향성, 환각,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 AI의 한계 극복 목적의 신규 R&D 추진(‘24, 40억원)
※ (차세대 생성AI기술개발) △생성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경위, 출처 설명 △편향성 사전 필터링 △비윤리·유해 표현, 사실 왜곡 등 검증용 평가데이터셋 구축 등
- (안전성 테스트 프레임워크) AI 위험 식별, 안전성 평가 지표·기법 개발, 모범사례 등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 수립(‘24.12)
- (AI 안전 전담조직 설치)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AI 혁신 기반 마련
※ 주요국은 AI 안전성 확보 추진의 핵심조직으로 ‘AI 안전연구소’ 설립(英 ‘23.11, 美 ‘24.2)
※ (주요기능) AI 안전테스트 프레임워크 수립, AI 안전 연구, 글로벌 협력

< ‘AI 안전 전담조직’ 설치·운영(안) >

(단기) 기반 조성	(중장기) 글로벌 주도
ICT 유관기관 內 AI 안전 전담조직 설치 ※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기반 마련	아태지역 AI 안전 허브화

④ AI 신뢰성·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

-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국내 산·학·연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문단 정기 운영(‘24.2~)
- (AI 윤리·신뢰성 포럼) 학계·산업계·시민사회·국제기구 등 각 부문별 전문가를 모아 AI 윤리 쟁점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 모색(격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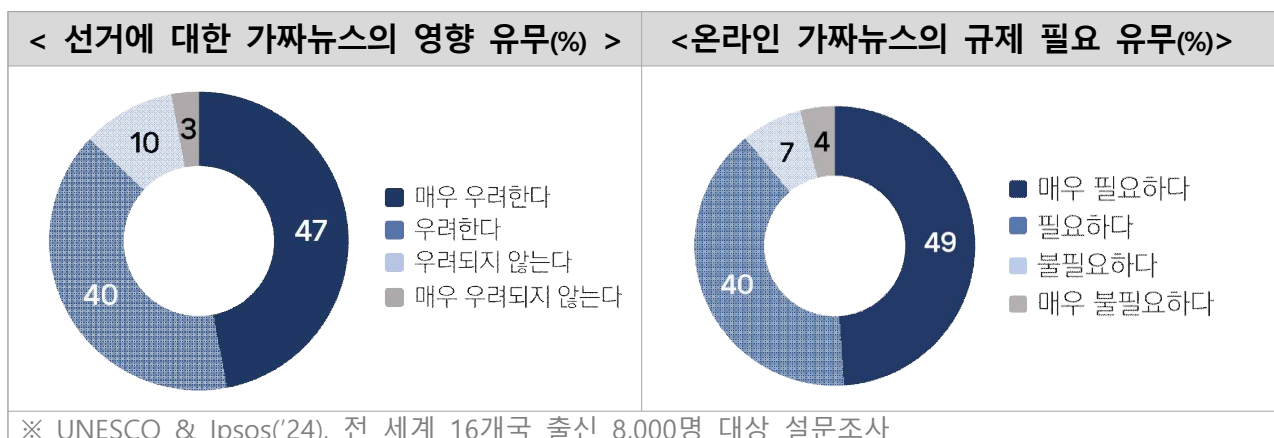
2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2-1 쟁점 분석

- **(현황)** 생성형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사회적 확산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등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점차 고도화·정밀화
 - 딥페이크로 정교화된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 개인의 권리 침해, 민주주의 위협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및 피해 발생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확산

* △(韓) 국회의원 선거(4.10) △(EU) 의회 선거(6.6~9) △(美) 대통령 선거(11.5) 등



- **(해외동향)**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 등을 실제와 혼동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차원의 기술적·제도적 대응추진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생성형 AI 관련 레드팀 구성 △AI 산출물 테스트 보호·장치 △AI 콘텐츠 명확한 라벨 표시 등을 내용으로 'AI 행정명령' 발표('23.10)
EU	▶ 플랫폼 기업에 불법콘텐츠 대응조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 시행('23.8) ▶ △딥페이크 개념 정의 △딥페이크 산출물에 라벨링 및 출처공개 등을 규정한 'AI 법' 제정안 의회 통과('24.3)
G7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23.5~)'에 따라 AI 워터마크 기술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행동강령(AI 안전·보안·신뢰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발표('23.10)
민간	▶ 구글, 메타, 오픈AI, 틱톡 등 20여 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AI 콘텐츠에 의한 선거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헨 기술협약'에 합의('24.2)

2-2 정책 대응 진단

- **(정책)** 딥페이크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구축·운영(‘24.2~)
 - *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구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등
 - ‘제4차 AI 최고위 전략 대화’(‘23.10)에서 주요 AI 기업들의 가시적 워터마크 등 안전조치 마련 동참에 합의
- **(법·제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 및 제한*, 불법 AI콘텐츠는 조사·삭제·과태료 부과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23.12)
 -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활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이외의 기간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의 표시 의무 부과

분석·진단 결과

- 현재 이슈 대응 기반의 자율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정책수단이 요구
-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AI기업, AI서비스 이용자, AI콘텐츠 소비자)의 책무를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필요

2-3 추진 과제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소주기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①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딥페이크 가짜뉴스 신속 대응

- (딥페이크 자율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조기도입, 자체 모니터링 및 조치 등에 대해 대표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 강화 지원('24.2~)
- (자율규제 활성화 연구)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및 사업자 책무강화 방안 마련('24)

②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딥페이크 제작·확산 관리 강화

- (딥페이크 선거운동 신속대응) AI 전담 모니터링반, AI 감별반, 분석·삭제반으로 구성된 대응체계 구축('24.1~)
 - ※ 선관위, 검·경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SNS기업과 협업체계 구축(2.5)
 -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 선제적 삭제 조치하고 삭제요청 불응 시 과태료 적극 부과, 악의·반복적 AI콘텐츠 제작·유포 행위는 고발
- (AI 생성물 표시제) AI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워터마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 제·개정('24~)

③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판별·탐지를 위한 역량 제고

- (딥페이크 탐지기술) 딥페이크 탐지·식별 등 기술적 대응력 강화('24)
 - ※ 기존 딥페이크 탐지 SW 고도화, 딥페이크 생성 차단 및 유포·확산·전파 탐지 기술 개발
- (정보판별 교육)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 **초·중·고** 학교급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24)
 - * 학년별·과목별 수업모델 개발·보급 및 체험형 캠프 운영
 - **성인** 생애단계별 정보판별 교육* 확대(계속)
 - *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 지역 소재) 통해 맞춤형 교육 추진, 협력기관 추가발굴

3-1 쟁점 분석

- **(현황)**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학습)** 저작물 포함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적절한 이용 권한 및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여부 등의 쟁점 제기
 - **(산출·이용)** 산출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방안,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요건과 범위,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AI 산출물 생성 및 이용 관련 쟁점 제기

사례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현황

(1) 저작물 학습데이터 관련 소송

- ▶ 뉴욕타임즈 → OpenAI/Microsoft 대상 저작권법 위반 소송('23.12)
- ▶ 개발자들 → GitHub 이용계약 및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 등을 이유로 Microsoft, GitHub, OpenAI 대상 소송('22.11)

(2) AI 산출물 관련 소송 및 등록 사례

- ▶ 블로그에 게시한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중국, '23.12)
- ▶ 美 저작권청은 AI가 만들어 낸 'Zarya of the Dawn' 산출물을 편집·배열 등의 방법으로 인간이 창작적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편집저작물로 인정('23.2)

- **(해외동향)** △미국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 △ EU·일본 등에서는 TDM(Text and Data Mining)규정을 마련했으나, 생성형 AI 활성화 이후 변화된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방안 논의 중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이며, 아직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바 없음 ▶ Open AI는 학습용 저작물 이용을 위해 AP통신, 셔터스톡(이미지)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23.7)
EU	▶ 과학적 연구 목적 및 일반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및 기계가독형 수단 등을 통한 권리자의 TDM 거부 의사 표시 허용(EU DSM) ▶ EU 저작권법 및 DSM 지침에 따른 권리자의 거부 의사표시 확인 의무 부여(EU AI act)
영국	▶ 비상업적 연구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저작권법 제29A조) * 상업적 목적까지 TDM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추진 포기('23.6)
일본	▶ 컴퓨터에 의한 정보해석 허용(저작권법 제47조의5),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대해 허용(저작권법 제30조의4) *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창작자의 피해 등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고려, TDM 규정에 대한 해석방안 및 기준 마련 중

3-2 정책 대응 진단

- **(공론화)** 학계 · 법조계 · 산업기술계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구성·운영(‘23.2~10, 총 9회)
 -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AI 모델 학습방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권리자 입장에서의 AI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등 논의
- **(가이드라인)** AI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설명을 담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마련(‘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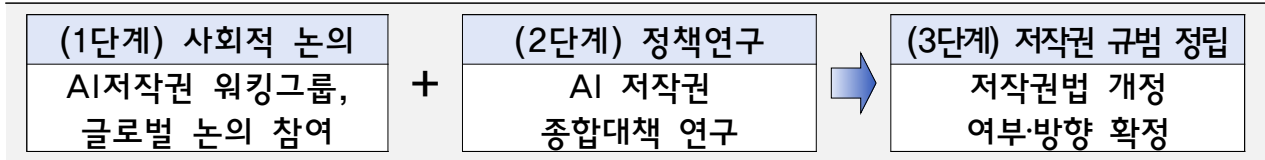
분석·진단 결과

- AI 관련 저작권 법제 정비 방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창작자와 생성형 AI기업 간의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등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구체적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
- AI·콘텐츠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입법 및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 확정이 요구

3-3 추진 과제

조속한 AI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AI 기반 창작산업 활성화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 제13조(디지털자산의 보호)



① 생성형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규범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 (AI-저작권 워킹그룹) 학계·법조계·산업기술계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운영하여(~'24.12)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진행
 - ※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과 **쟁점별 심화 토론** 추진을 위해 **학습**과 **산출분과**로 구분
 -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 권리자, 사업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24.10),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대국민 공표('24.12말)
- (AI-저작권 글로벌 논의) WIPO, OECD 등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활용 관련 국제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계속)

② 권리자-AI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적 대응방향 정책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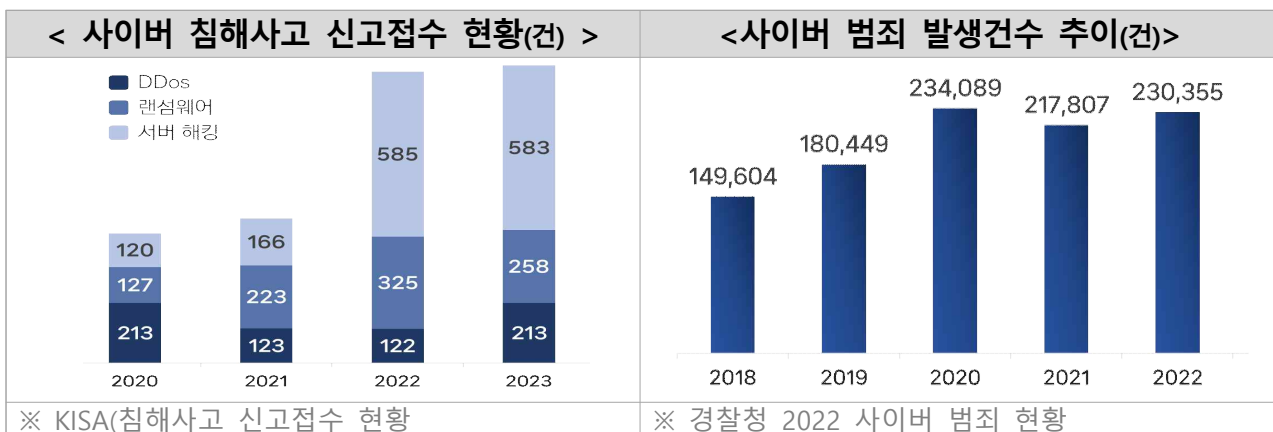
- (AI 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AI 저작권 쟁점 분석 및 정책대안, AI 저작권 관련 글로벌 이슈 연구(~'24.12초)
- (AI 학습 이용대가 연구)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뉴스 등 어문 저작물 중심)의 적절한 이용 대가 마련 연구(신탁관리 범위 내, ~'24.12초)

③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규범 방향 정립

- (저작권법 개정 논의)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보호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명확화 및 합리적 법제 마련 추진('24.12)
 - ※ (예시) △생성형 AI의 악용을 막기 위해 **AI 산출물 표시제**(워터마크) 도입 여부
 - △생성형 AI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방안 등
- (AI 산출물 표시 자율규제) 생성형 AI기업의 AI 산출물 표시제도 (기계관독 가능한 기술적 표시 등) 자율적 도입 지원('24.6)
 - ※ 자율규제 도입 기업 대상으로 정부는 기술개발, 콘텐츠 출처 확인 체계 개발 등 지원

4-1 쟁점 분석

- **(현황)** 디지털 연결이 강화되면서 물리적 재난·재해(망 장애 및 데이터 센터 화재 등),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 사이버 범죄까지 위협 확대
- 모든 일상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디지털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지장 초래
 -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22.10)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장애 약 5일간 지속
 - 최근 사이버 위협이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일상생활과 기업경제,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
 - ※ 최근 10년간 국내 사이버범죄는 연평균 17만 2천여 건 발생(경찰청, "2024 치안 전망")
 - 피싱,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범죄는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

○ **(해외동향)**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대상 30분 이상 장애 발생 시 위원회에 장애사실 통지(120분 내), 1차 보고(72시간 내), 최종 보고(30일 내) 의무 규정 ▶ '국가사이버보안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발표('23.3)
EU	▶ 네트워크 위험관리 조치 및 사고 보고 의무 조항 등을 각국 통신법에 반영하도록 규율하고, 각 국은 EU에 사고통지 및 조치 보고서 제출(연1회) ▶ '사이버 방어 전략(Cyber Defence: EU boosts action against cyber threats)' 발표('22.11)
영국	▶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장애 발생 시 정부에 장애사실 보고 의무 규정, 데이터센터 장애 보고 및 복원력 기준 등 제도 마련 중 ▶ '국가 사이버 전략 2022(National Cyber Strategy 2022)' 발표('21.12)

4-2 정책 대응 진단

【디지털 재난】

- **(정책)**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발표(‘23.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23.11.)을 통해 전주기 재난관리체계 구축
- **(법·제도)**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시행 ‘23.7)으로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에 재난관리 의무 부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위협】

- **(정책)**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써,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24.2)
※ (그외 주요 정책발표) △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발표(‘22.7)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 수립(‘23.9) 등
- **(법·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발표(‘23.7)
*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새로운 보안개념(Never Trust, Always Verify)

【사이버 범죄】

- **(정책 및 법·제도)**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 유형인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에 관계부처 역량 집중

구분	주요 내용
피싱	▶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체계 구축(‘21.12~)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3.2)을 통해 처벌 수위 상향 등 대응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21) 188천건 → (‘23) 275천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23년 3.6만건) ▶ 사이버안심존(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 노출 방지) 앱 개발 보급

분석·진단 결과

- 디지털 안전 관련 법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국가 단위의 체계적·전략적 대응에 한계
- 新보안 위협에 맞선 기술·산업 역량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
-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실효적 추진과 함께 피해 예방·보호를 위한 규범체계 구축 필요

4-3 추진 과제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 확충

「디지털 권리장전」 제18조(디지털 위협 대응)

【디지털 재난】

① 디지털 재난·장애 통합법 제정으로 안전 관리 강화

-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상시·종합적인 디지털 재난·장애관리를 위해 디지털 안전 분야의 통합 법제 마련('24~)
 - *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법규정을 통합하여 규제적용 일원화, 디지털 안전 전담 기관 지정,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 통합법 제정 전 디지털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개정(6월)
 - *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이상), 무료서비스도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공개 등 규정
 - **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안전성 보강, 전력공급 연속성 확보, 화재 및 수해 대비 체계 구축 등
- (전자정부법 강화) 공공부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관리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24~)

② 민관이 협업하여 디지털 재난·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강화

- (디지털서비스 안전 점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실태점검, 중요통신시설 및 데이터센터 안전 점검 추진(~'24.12)
 - ※ (점검대상) SKT, KT 등 11개사 / 카카오, 네이버 등 7개사 / SK C&C 등 8개사
- (모의훈련 실시)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24.7), 매뉴얼에 따라 정부·사업자 합동 모의훈련(연 3회)

【사이버 위협】

① 최적의 보안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SW 공급망보안) SW 코드 속에 악성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여 개발 가이드라인 신규 배포('24.4)
- (제로트러스트 2.0)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에 기반한 실증사업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실용성을 높인 가이드라인 개정('24.12)

②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K-사이버 보안 기술에 집중 투자

- (4대 기술 집중투자) △데이터·AI보안 △네트워크보안 △디지털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중점개발('24년 1141억원 투자, 전년대비 22.5% ↑)
 - AI 보안시스템 '사이버 스파이더*' 구축('24, 90억원 신규)
 - * 공격자 프로파일링, 위협 추정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
 - 저비용·고효율의 EMP* 방호기술 개발 및 취약성 평가기준 마련('25)
 - * 전자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시킬 정도의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
- (민관 협업체 출범) 민간 주도의 통합보안 모델 개발에 있어 애로사항 해소, 판로·투자·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출범('24.6)

【사이버 범죄】

① 강력한 법 울타리로 민생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피싱 종합대응) 피싱 예방·수사·피해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24~)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24~)
 - 딥페이크 활용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온라인 사업자 에게 자동통보하는 시스템 개발('25~)
- ※ 디지털 성범죄 정책 여론조사('24.上)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청소년 보호사업 확대)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심존' 확대 보급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 사업자 지정('24)
 -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위한 청소년 용 스마트폰 앱('24년 3,100곳)
 - **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시행('23년 163개)

5-1 쟁점 분석

○ **(현황)** AI·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이 각종 사회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연령, 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른 디지털 접근과 활용 격차는 점차 심화

- 기차표 예매·발권, 모바일 banking 등 일상에서 앱 또는 키오스크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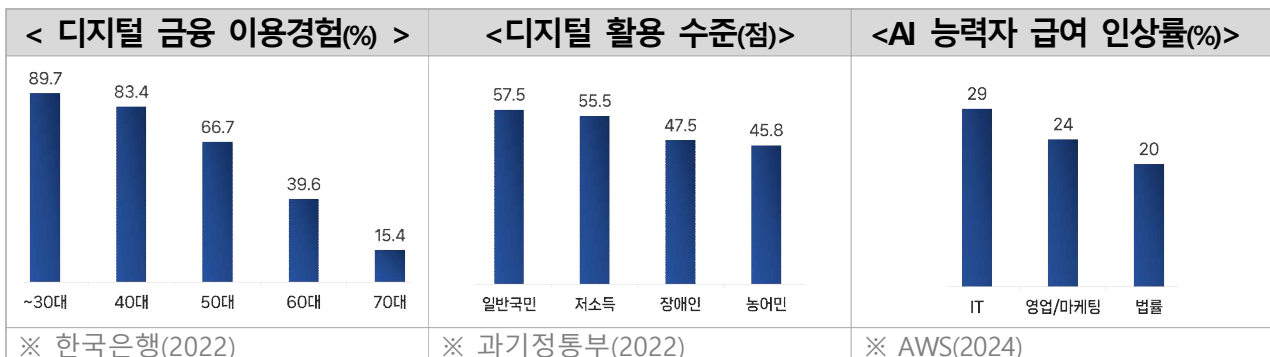
* 디지털 기기 활용의 어려움은 '고령층의 금융활동 소외문제'로 연결(인권위, '22)

- 낙후된 인프라, 생산인구 감소 등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농 간 디지털 격차'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

* 농어민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45.8점으로 국민 평균(57.5점)보다 낮음.(과기정통부, '22)

-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수준이 향후 생산성과 임금격차로 연결*

* 한국의 AI역량 보유자 연봉은 기존보다 18%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AWS, '24)



○ **(해외동향)** AI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은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 수립과 환경 조성에 주력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디지털 형평성법'(Digital Equity Act, '21.11) : 지역, 인증, 계층 등과 상관 없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한 디지털 환경 조성
프랑스	▶ '디지털 포용전략'(Plan national pour un numérique inclusif, '18.5)에 따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본	▶ 일반 국민 편의와 고령화, 정보격차 등 여러 사회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사업자 책무 등을 담은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21.5) 제시

5-2 정책 대응 진단

- **(정책)** ‘디지털포용 추진계획’(‘20.6) 및 ‘디지털 권리장전’(‘23.9) 수립을 통해 디지털 접근·활용을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선언

※ 장애인의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

- **(기반 조성)** 어디서든 누구나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불편함 없이 접근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집중*

* 전국 공공장소(5.2천개), 시내버스(2.9만대), 농어촌(2,288곳) 등 통신 인프라(wifi 등) 구축

< 디지털 접근·이용 환경의 ‘대한민국 위상’ (‘22년 기준) >

순위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초고속 인터넷 보급	ICT 인프라	모바일 속도	5G 보급률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UAE	미국
2위	노르웨이	일본	영국	대한민국	네덜란드
3위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중국	대한민국

출처 : OECD, WIPO, UNCTD, Kepois 등

- **(기술/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과 활용이 쉬운 기술/서비스* 발굴·제공

* **기술 사례** : 장애인 보조기기, 음성 인식기술, 웹·앱·키오스크(베리어프리) 접근 표준 등

* **서비스 사례** : 수어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장애인 길안내 서비스,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디지털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 **(활용 역량)** 디지털 접근·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소양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 확대

※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3년까지 누적 287만 명에게 기초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

분석·진단 결과

- 디지털 기술기기의 도입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여전히 **지역사회(농어촌) 및 계층별 디지털 격차**는 해소가 필요한 상황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이 겪고 있어, **더 쉽고 접근이 용이한 기술/서비스/대체수단 마련**이 요구
- 디지털 접근·활용에 대한 역량 교육이 취약계층과 기초 소양 교육 중심이던 것에서, **AI·디지털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 국민 역량 교육**으로 발전 필요

5-3 추진 과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

「디지털 권리장전」 제6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①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포용 거버넌스 및 법 제정 추진

- (법제화 추진) AI·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디지털 접근·활용을 보편적 권리로 법제화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추진(‘24)
 - **평가·점검** 국가기관 등이 대민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제도 도입(‘24)
 - **비교·분석** 지역별 디지털 포용 수준을 분석하는 디지털 포용지도 구축(‘24)
- (접근성 보장 의무화)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5.3) 및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24~)
 - *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와 시정명령 절차, 실태조사 등 구체화
- (디지털 교육규범 마련)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체계를 정립하고 국제사회로 확산(‘24.6~)
 -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2.8)」, 「디지털 권리장전(‘23.9)」 등과 연계
-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및 협력국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 디지털 포용 국제 거버넌스 수립(‘24~)

②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된 디지털 이용 환경 및 서비스 개선·확대

- (지역사회 접근권 보장) 농어촌 지역의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조기 완료(‘24), 지역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23~)
 - 통신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5G 음영구역 해소(‘24), 노후화된 와이파이 1.4만대를 신기술 기반으로 교체하는 차세대 Wifi 인프라 신규 기획(‘25)
 - 전국 7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구축(‘24)
- ※ 예산 : (‘22)11개 지자체 100억 → (‘23)45개 지자체 632억 → (‘24)178개 지자체 1,039억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 예시

노인 공동체 거점인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참여자들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23년 8개 지자체 → '24년 27개 지자체)



지역 아동센터 등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VR/AR 기술 기반의 체험 프로그램** 제공 ('23년 1개 지자체 → '24년 6개 지자체)



- (계층별 접근권 보장) 고령층, 청년, 다문화 등 계층별로 디지털 접근·활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포용 사회 서비스 제공('24~)
 - **고령층** : 독거노인을 위한 AI·디지털 돌봄 서비스('23~),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한글햇살버스'(3개 도시, ~'25.2) 등
 - **청년층**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미래설계 교육('23~),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청년요금제 신설('24), 청년 대상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24~) 등
 - **다문화** : 다문화 청소년 대상 기술고등학교 운영('12~) 및 디지털 배움터 내 다문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24~)
- (디지털 대체수단 보장)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생활의 필수 영역에서는 대면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등 대체 수단을 운영
 - **행정** : '찾아가는 보조금 24' 활성화('24년 누적 6,050명 서비스 제공)
 - **생활** : 서울 시내를 순회하는 디지털 안내사('23~) 확대
 - **금융** :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업무(조회·입·출금) 이용 확대(8개→10개社, '24)

※ (우체국 금융창구 이용자수) '22년 419만건 → '23년 728만건 (73.7%↑)

③ AI·디지털 활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교육 인프라 강화) 개별적·임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디지털 배움터를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상시·맞춤형 교육 거점화('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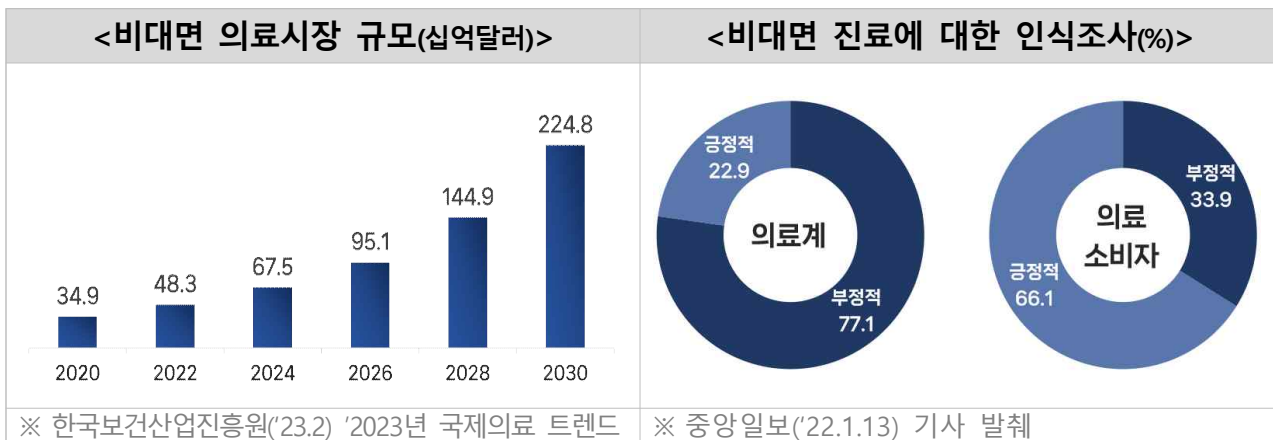
※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설 운영되는 디지털 배움터 체계로 개편하고 총 35개소 이상 운영 추진
-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단계적 도입

* ('24년) 검정심사 → ('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도입 → ('26~'28년) 단계적 확대
- (디지털 인재양성) 정보 교과 시수 확대, 디지털 새싹 운영, AI·SW 소양을 갖춘 인재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AI·디지털 역량 개발

※ 정보교육시수 확대(초등 34시간 중학교 68시간) / AI 정보교육중심학교('24 500개교) / SW중심대학('24 58개교)

6-1 쟁점 분석

- **(현황)**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장애인, 만성질환자, 의료 취약지 주민, 주간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 등 의료 이용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비용·시간 절약 및 진료권 향상
 -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계 원격의료 사용이 그 이전보다 38배 증가(McKindsey, '22.12)
 - 반면, 의료 질 저하, 과잉 진료, 의료 상업화,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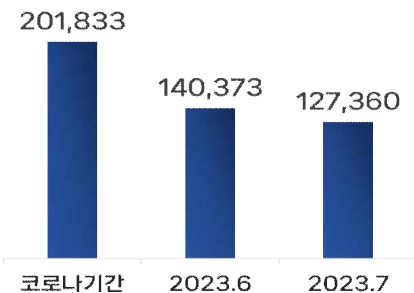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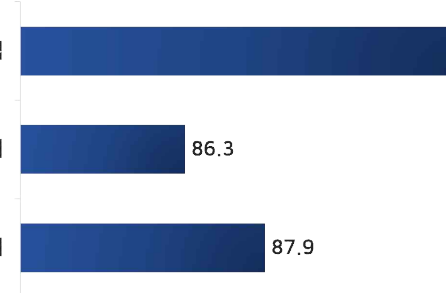


- **(해외동향)**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코로나19 이전에는 22개국 비대면 진료 허용,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전부·일부 허용

구분	주요 내용
미국	▶ 1996년 원격의료 도입 법제화, 서비스 장비규격 및 비용 부담까지 법제화 ▶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서 의약품 배송이 가능 → 2020년 온라인 약국 아마존 출범, 약국 드라이브 스루 등 서비스 시작
일본	▶ 1997년 의사 간 원격 의료 허용 → 2011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 2021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항구적'으로 시행 → 2022년 온라인 진료 지침을 통해 초진까지 폭넓게 허용
프랑스	▶ 2009년 병원개혁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명시 → 2018년 사회 보장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의사는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제안 가능 ▶ 암호화된 처방전이 전송되어 안전성이 보장되며, 의약품은 배송 실시간 추적 가능
독일	▶ 2015년 전자보건법 제정 → 2018년 경증 질환 등에도 원격진료 허용 → 원격의료 광고 및 의약품 배송도 허용

6-2 정책 대응 진단

- **(법령)** 「의료법」 개정('02)으로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이 허용, '23.6월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해 실시
- **(제도)** 규제샌드박스 도입('19) 이후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 등)를 받고 시장에 출시
 - * 손목착용형 심전도계를 활용하여 환자 심전도 모니터링, 로봇으로 비대면 재활 훈련 상담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 **(시범사업)** '88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원격 협진이 허용된 이후('03) 기술적 성숙에 따라 많은 시범사업*이 시행,
 - * 응급의료영역,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취약 기관 대상 원격진료 등
 -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으며 누적 이용자 수는 329만명을 기록('20.2~'22.12)
 - *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의료기간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
 - 이후 재진환자, 의료약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23.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자수(명)>	<향후 비대면진료 활용 의향 - 지역별*(%)>																
 <table border="1"> <caption>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자수(명)</caption> <thead> <tr> <th>기간</th> <th>이용자수(명)</th> </tr> </thead> <tbody> <tr> <td>코로나기간</td> <td>201,833</td> </tr> <tr> <td>2023.6</td> <td>140,373</td> </tr> <tr> <td>2023.7</td> <td>127,360</td> </tr> </tbody> </table>	기간	이용자수(명)	코로나기간	201,833	2023.6	140,373	2023.7	127,360	 <table border="1"> <caption>향후 비대면진료 활용 의향 - 지역별*(%)</caption> <thead> <tr> <th>지역</th> <th>의향 (%)</th> </tr> </thead> <tbody> <tr> <td>읍면지역</td> <td>91.7</td> </tr> <tr> <td>중소도시</td> <td>86.3</td> </tr> <tr> <td>대도시</td> <td>87.9</td> </tr> </tbody> </table>	지역	의향 (%)	읍면지역	91.7	중소도시	86.3	대도시	87.9
기간	이용자수(명)																
코로나기간	201,833																
2023.6	140,373																
2023.7	127,360																
지역	의향 (%)																
읍면지역	91.7																
중소도시	86.3																
대도시	87.9																
* 코로나 기간: 2020.2~2023.5 간 월 평균 이용자수	* 전체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의향은 87.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복지부, '23.9)																	

분석·진단 결과

-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기한 또한 만료 될 예정으로 의료산업계의 불확실성 지속
- 국민 안전성, 편의성,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 노력이 병행될 필요

6-3 추진 과제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 및 의료산업 혁신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 제22조(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제23조(디지털 규제개선)

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조성('24~)
-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환자용 프로토콜, 진료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25)

* 대국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의료계·유관 단체 등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

※ (참고)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은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등 포함

② 규제특례를 부여한 혁신 기술로 비대면 진료의 품질 향상

- (의료 마이데이터) 건강검진 결과, 투약 정보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법 적극해석*(24.3~)
- *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적용되는 특례방법
- (디지털 혁신기기 활용) 디지털 혁신 기기를 비대면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

③ 고품질·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위한 철저한 정책연구

-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 위·변조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등 관리체계 개선방향 마련(~'25)
- (처방정보 보호) 처방정보의 안정적 전송·관리 등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관리방안 연구('25)

- (이용자 편의 제고) 비대면 진료 이용자(환자, 병원, 약국)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심층연구(~'24)
 - 주요국의 기술·제도,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분석 병행
 - ※ (예시)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

4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비대면 진료 안정화

- (정기적 소통창구 운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비대면진료 운영 이슈별 이해관계자와 대면 소통('23~)
 - * 의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대표성 있는 위원 참여
-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설문·토론 등으로 국민과 온라인 소통('24.3분기~)

사례 민생토론회(7차, 1.30) 당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국민

(관련 발언)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아직은 주변에 비대면 진료를 하는 기관과 약국이 많이 없어요. 앞으로는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1 쟁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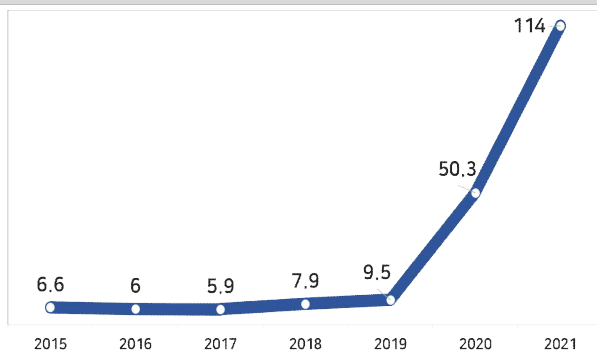
○ **(현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및 영상의 등을 통한 원격 업무가 급격히 확대

- 근로시간 이외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지시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가 사회 문제로 대두

※ 경기도 내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34.2%는 주 1회 이상 경험한다고 응답(경기연구원,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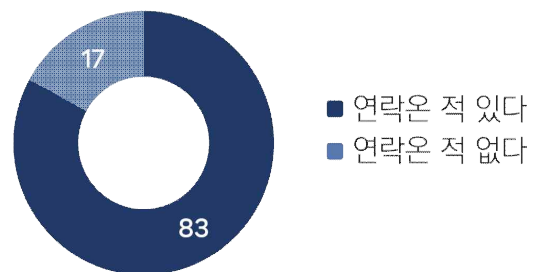
※ 직장갑질 지수 중 '퇴근 후 SNS 연락'에 대해 관리자와 일반직원 간 인식 차(각 55.9점/73.1점, 17.2점)가 가장 크게 나타남(직장갑질119 조사결과, '19)

< 임금근로자의 재택근무 추이(만명) >



※ 경제활동인구조사(2022)

<퇴근 후 업무 연락 수신 여부(%)>



※ 인크루트 직장인 1056명 대상 설문조사('22.5)

○ **(해외동향)** 일부 국가에서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등 다양한 대안 검토

구분	주요 내용
프랑스	▶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노사 합의 내용을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 위반 시 고용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로그오프법」 시행('17)
스페인	▶ 단체협약 등을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내 규정을 제정,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8)
호주	▶ 고용주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금지, 위반시 고용주에게 벌금 부과할 수 있는 「공정근로법」 개정안 상·하원 통과('24.2)

7-2 정책 대응 진단

- **(공론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24.2.)에서 '일·생활 균형추' 구성안 의결, 근로시간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논의 추진
 - 조직문화 혁신 측면에서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부 대기업·지자체* 등이 사내문화 캠페인 진행
 - * 서울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17.9), 광명시는 퇴근 후 SNS 통한 업무지시 금지를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 발표('17.7) 등
 - 근무혁신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근무혁신 실천을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발표('23.6)
 - * (근무혁신 10대 제안)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한 근무 등
- **(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도'('08) 등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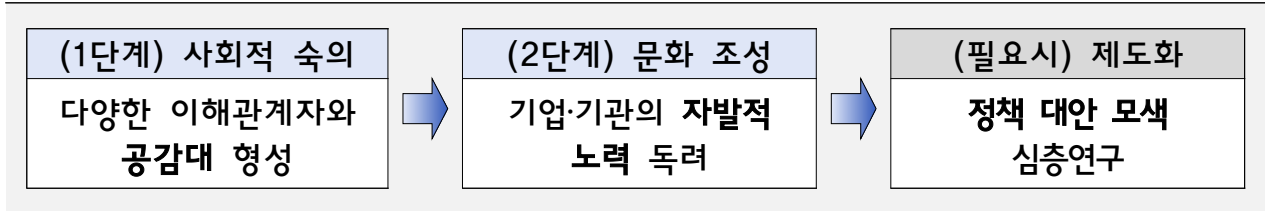
분석·진단 결과

- 노동자의 휴식권 측면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부상하고 있지만,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며 개별 국가별로 제도적 규율방안이 보편화되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 연구 필요
- 디지털 심화시대에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기업·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 등 정부의 지원이 요구

7-3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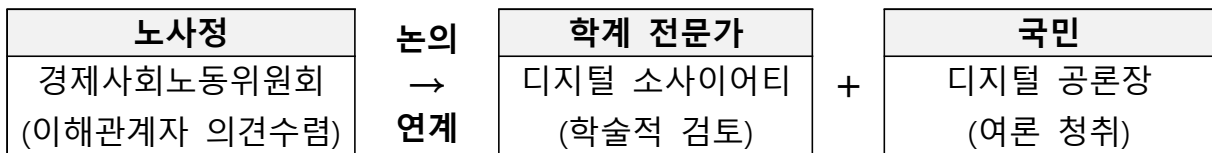
디지털 심화 시대, 일할 권리와 실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문화 조성

「디지털 권리장전」 제11조(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공론화 창구 확대) 노·사·정, 학계 전문가, 국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24)



② 퇴근 후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디지털 디톡스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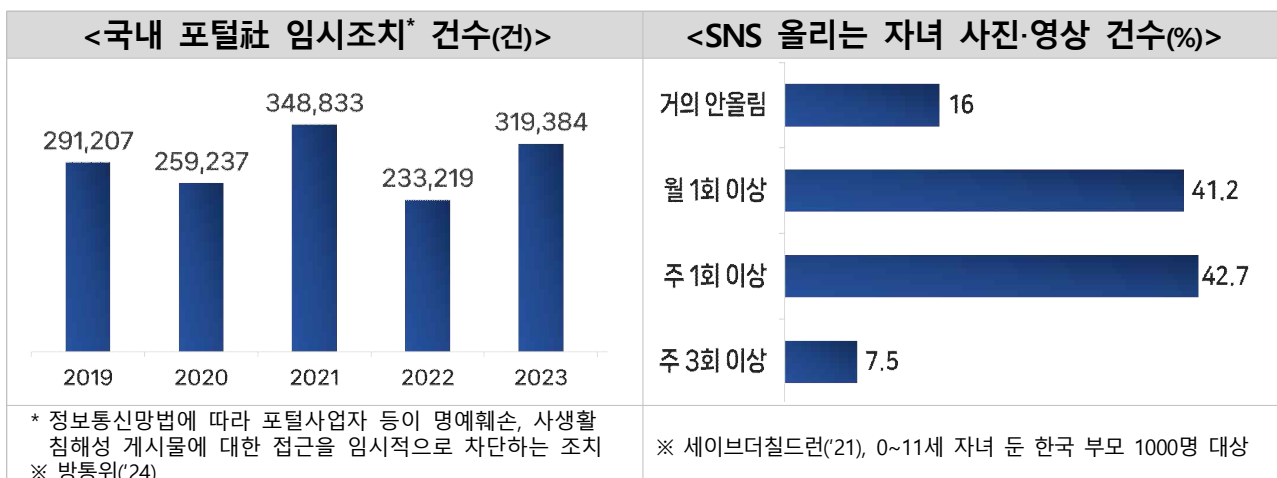
- (디지털 선도기업 참여) 원격·유연근무가 많은 디지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문화 확산(‘24, 선언식·계획 발표 지원)
 - 우수사례 홍보,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교육·상담 강화) 스마트쉼센터 내에서 과의존 예방,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찾아가는 ‘업무 연결 쉽’ 캠페인 실시(‘24)

③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가능성 심층 연구

- (정책대안 모색) 해외 입법동향, 우리나라 노동환경·법제를 감안한 규율방식, 현장의견 실태조사를 담은 심층 정책연구 추진(‘24)

8-1 쟁점 분석

- **(현황)**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방대한 정보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의 접근·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 제기
- 자녀의 사진·영상을 업로드 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가 86.1%에 달하는 등 셰어런팅(Sharenting)*이 ‘잊힐 권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
 - *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동영상 등이 아이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그 외에도 초상권, 사생활 침해, 범죄 표적 노출 등 다양한 이슈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



- **(해외동향)** EU와 미국의 경우 ‘잊힐 권리’ 제도화에 편차는 있으나, 특히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을 중요시

구분	주요 내용
EU	▶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내에 잊힐 권리 명문화(Article 17) ▶ 아동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잊힐 권리가 중요함을 강조(Recital 65)
미국	▶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연방법 차원의 통일된 법률은 부재하나, 아동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COPPA) 개정을 추진 중 ▶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법*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 중 *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 CBPC §22581(a)(1))

8-2 정책 대응 진단

- **(법령)** EU 법제와 같이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법상 근거 규정* 존재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규정, 「언론중재법」 정정보도 청구 규정,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 규정 등

- **(가이드라인)** 정부는 자기게시물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 구제를 위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16)

- **(지원사업)**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행사 지원을 위한 ‘지우개 서비스’ 시행(‘23.4~)

※ 시행 첫 해 꾸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총 11,487건 접수 / 10,813건 처리

< “지우개서비스” 주요내용(‘24.1월 기준) >

- ▶ 신청연령 :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 ▶ 지원대상 : 19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 ▶ 지원내용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삭제, 블라인드 등) 신청·상담
- ▶ 이용절차 : 총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신청·접수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	접근배제 등 요청	모니터링 및 통지
(국민→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사업자)	(개인정보위→국민)
개인정보포털 (privacy.go.kr) 접수	- 담당자 1:1 매칭 - 지원 대상, 방법 판단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분석·진단 결과

- 개별법령을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전부터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
- 제3자가 올린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 법·가이드라인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지우개 서비스’ 적용에도 한계

8-3 추진 과제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 제9조(개인정보의 접근·통제), 제19조(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① 법·제도 개선으로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실질화

-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제도화) '지우개 서비스'의 제도적 근거와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 및 조건을 명확화한 제도개선 추진('24.1~)
 - '지우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서비스 범위를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까지 확대 추진(법 개정 직후)

②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넓혀 잊힐 권리 실현의 폭 확대

- (지우개 서비스 확대) 지원대상을 만 30세 미만까지 포섭('24)
 - ※ ('23년) 24세 이하 누구나, 18세 미만 시기에 올린 게시물 → ('24년) 30세 미만 누구나, 19세 미만 시기에 올린 게시물
 - 서비스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및 대상 연령 확대 등 검토('25)

③ 정책연구를 통해 잊힐 권리 구현 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

- (잊힐 권리 예외사례 연구) '잊힐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다른 권리와의 관계 연구 및 잊힐 권리 예외사례 도출('25)
 - * 게시물의 삭제가 제3자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공익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권리 보호 실익 간 비교형량 필요)
 - '지우개 서비스' 사업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잊힐 권리'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예산, 인력 수요 파악 병행

Ⅲ. 12대 정책과제 추진계획

12대 정책과제 목록

유형	정책과제	쟁점
① 디지털 심화 시대 기본권 보장	①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합한 노동권리 보장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재택근무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 대응
	②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유·초·중등 AI·디지털 교육 확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③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체계 개편
② 디지털 심화 시대의 지속적인 혁신	④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온라인 플랫폼 · 시시장 공정성 확보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
		디지털세 과세 방안
	⑤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여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
	⑥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가상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

	⑦ 데이터 개방 촉진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민간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⑧ 분야별 AI 활용 기준·원칙 정립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기준 정립
		금융 분야 AI 활용 기준 정립
		AI를 활용한 채용 시 기준·원칙 정립
		군사분야 책임있는 AI의 활용 방안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자율운행선박 관련 법·제도 정비
		디지털·AI 의료기기 활용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⑨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
③ 디지털 심화시대의 철저한 대비	⑩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AI·데이터 활용
	⑪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⑫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① 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주요 현황	대응 과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	○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미흡 ※ 플랫폼 종사자 수 '21년 66만명 → '22년 80만명 ※ 보수 무지급(22.0%),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18.1%), 일방적 보수삭감(16.0%), 계약 외 업무배당(15.2%), 앱 이용 일시 정지·차단(15.2%) 등 (플랫폼종사자실태조사결과, '21년)	○ 플랫폼 종사자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한 직종별 표준 계약서 개발 (‘24.12)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일터 개선 지원 다양화 ※ 플랫폼기업 또는 지자체가 쉼터 설치, 법률·심리 상담 제공 등 종사자 맞춤형 일터 개선 사업 추진 시 사업 소요경비의 최대 50%까지 지원
고용부		
디지털 심화에 다른 근로형태의 변화 대응	○ 코로나19 이후 재택(원격)근무의 감소 ※ 코로나19 확산 시 재택근무를 시행하다가 중단한 기업은 38.7%, 시행하지 않은 기업 3.2%로 조사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조사 결과, '23년)	○ 유연근무 도입 인프라 지원 ※ 시설·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기업 내 유연근무 활용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장려금 지원(육아 대상자는 10만원 추가)
고용부		

② 디지털 심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주요 현황	대응 과제
유·초·중등 AI·디지털 교육 확대	○ 미래 세대(유·초·중등)를 위한 개인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 필요	○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도입 ※ (일정) 검정 심사 완료(‘24.11) →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과 도입(‘25.3~) ○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및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지원 ○ 디지털 및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17→34시간), 중학교(34→68시간) 정보교육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 공교육과 디지털 교육기술(에듀테크)이 상생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 1,000개교 내외, 700억원 /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00개교 ○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공교육과 연계된 에듀테크 제품을 실증) 확대, 교육 현안 해결형 교사-기업 에듀테크 프로젝트 등 (‘24)
교육부		

③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주요 현황	대응 과제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 시스템 정비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종사자 등 비표준 노동유형 확대 ※ 보험·대출 모집인, 택배기사 등 고용이 불 완전한 근로종사자는 지역 가입 적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태조사 후,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에 대한 단계적 전환방안 검토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3)
복지부		
디지털화 대응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디지털 분야 인력수요 급증 및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 변화 ※ 5년간('23~'27) 신기술 분야에서 약 34.5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직업능력연구원)	○ 디지털 기술 현장형 인재 양성 훈련 제공 ※ K- 디지털 트레이닝 양성인원 확대 ('23년 3.6만명 → '24년 4.4만명)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확대 ('23년 1,530명 → '24년 2,030명) ※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확대 ('23년 60개소 → '24년 73개소)
고용부		

2

디지털 심화시대의 지속적인 혁신

⑤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주요 현황	대응 과제
온라인 플랫폼· AI 시장 공정성 확보	○ 빅테크 기업의 반칙*·독점 등에 대응 한계 * 경쟁사 시장 접근 제한,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 해외 사례 :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점화 규율 (EU 디지털 시장법, '24.5), 고위험 AI 대상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시 추진(EU AI법, '23.12) ○ AI·플랫폼 등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 지난해 대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분쟁 2배 이상 증가(한국공정거래조정원, '24.2)	○ 반칙행위, 독과점 등 해소 및 공정성 확보 ※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 및 자율규제 확산· 고도화 방안 마련(기재부·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24.12.) ※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등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공정위(~'24) ※ AI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공정위(~'24) ○ AI·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 방안 마련(법무부(~'24) ※ 소송 및 법률 자문 제공 등 관계 처분청 협업
기재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법무부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등 추진 필요 * 주요 온라인 쇼핑몰 76개 조사 결과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됨(한국소비자원, '23.11)	○ 전자상거래법 하위규정 정비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규약 추진(공정위) ○ 전기통신사업법 법령 정비(방통위)
공정위, 방통위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유료방송 성장 정체*, 방송-OTT 간 경계 파괴 등 재편되는 시장환경과 현행법 규율체계 사이 부조화 심화 * OTT 확산 등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가율 0%대 등 지속 정체(과기정통부, '23.11) ※ 서비스별 특성 고려 없이 전송네트워크에 따른 칸막이식 규율은 현행 법체계의 실효성 소멸	○ 미디어 간 규제 형평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마련(~'24.12) ※ 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방송법·IPTV법 등 개정 및 세부 이행과제 마련
과기정통부, 방통위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	○ 망 이용대가 관련 콘텐츠사업자(CP)-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갈등으로, 전송품질 저하 등 이용자 피해 우려 * (넷플릭스-SKB)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대가 관련 소송전 발생('19) → 합의 종결('23.9) (트위치) 해외 대비 10배 비싼 망 대가로 인해 국내 사업종료 발표('23.12)	○ 주요국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등 정책방향 검토(과기정통부 (~'24.12) ○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연구(방통위 (~'24.12) ※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정립 및 법제화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방통위		
디지털세 과세 방안	○ 산업의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법인세 과세 곤란, 조세회피 등 조세 사각지대 발생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국무역협회, '24.2)	○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 대응하여 협상 타결 시 국내 입법화 등 추진('24~)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 (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145개국 참여)
기재부		

⑤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

	주요 현황	대응 과제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	○ 가상자산, 가상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 미흡 ※ 국내 가상자산 규모 '22 19조원 → '23.6 28조원(46% ↑)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보호 미흡 ○ 비밀 관리 중 공지 데이터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4.2.) ○ 해외 등 시장 진출 시 특허 유무 사전 파악 불가능 및 소송 우려 ○ 데이터의 귀속 주체와 유통에 대한 법률 해석 모호	○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와('24.5.) 데이터 가치평가 및 취득·사용 관련 안내서 마련(과기정통부 (~'24)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 범위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보호 방안 검토(문체부 ('24.4~12)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안내서 발간·배포('24.5) 및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 수사·조사 실시(특허청 ○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개정('24.8) 및 산업재산 데이터 관리, 활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시행('24.4~) (특허청 ○ 데이터 귀속 등 법률관계 규율 위한 입법 방안 연구('24~)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특허청, 법무부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 여부 법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규율 부재 * 망인이 사용한 SNS, 이메일 등에 남긴 디지털 자료, 계약에 따른 재산적 성격의 자료 ※ 개인정보보호 및 알권리 등 국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디지털 유산 상속 관계 규율 입법방안 연구('24~)^{법무부}, 다양한 이용자 권익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25.下~)^{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26),^{개인정보위} 등 분야별 정책연구 추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 금융위, 법무부	○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담보설정, 강제집행 등 민사법적 분쟁 심화 ※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 방안' 연구 진행('22) ※ 가상자산관련 법률안(19건)을 통합·조정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3.7) 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금융위}(24.7) ○ 가상자산 관련 민사법적 법률관계 규율을 위한 방안 연구^{법무부}(24) ※ 국내외 입법 동향, 법제도 개선 방향 등

⑥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주요 현황	대응 과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통위,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 가상공간에서의 범죄 대응 한계* * 게임과 메타버스 간 불명확한 정의,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 범죄 등 처벌규정에 대한 법·제도적 체계 불명확 ※ 메타버스 윤리원칙('22.11) 및 실천윤리('23.12) 제정, 산업진흥을 위한 가상융합 산업진흥법 제정('24.2)	○ 메타버스 내 불법 음란정보 유통 모니터링 강화^{방통위} ○ 가상공간 특성을 고려한 처벌 규정 및 형사절차 상 특례 정비 검토^{법무부} ○ 한국 메타버스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포럼 개최^{과기정통부}(24.下) ○ 게임물-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 수립^{과기정통부·문체부}(24)
가상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 법무부	○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성희롱, 딥페이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 증가 ※ 인격권 명문화 관련 「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3)	○ 가상공간에서 인격권 관련 쟁점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24~)

⑦ 데이터 개방 촉진

	주요 현황	대응 과제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행안부	○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15~'23}(198개 분야) 및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운영 ※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22.12.)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현황 89,195건('24.3월 기준)	○ 국가중점데이터를 확대(20개 분야, '24년) 및 전국통합데이터* 개방사업 신규 추진 * 자치단체마다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개방되어 민간의 활용성이 낮은 데이터 통합 개방(예시 : 공영자전거 데이터 등) ○ '차세대공공데이터포털' 구축('24~'26) ※ (기존) 기관 시스템과 포털에 이중 등록 → (개선) 기관 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 간 연계

민간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 민간이 데이터*를 공유·개방하기 위해 소통·협업·거래하는 채널과 인프라 부족 ※ 기업 등은 ‘데이터 유통채널 부족’(19.4%)을 데이터 거래의 애로사항으로 제시(데이터 산업 현황조사(‘23.4))	○ 민간이 자율적으로 AI데이터를 공유·개방 할 수 있는 데이터 중개·소통창구 구축(‘25~) * 기업·연구자 등이 AI-데이터를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를 중개·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	--	---

⑧ 분야별 AI 활용 기준·원칙 정립

	주요 현황	대응 과제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기준 정립 교육부	○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이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 ※ 현장 소통 강화와 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교육 활용을 위한 규범 체계 정립 필요(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23.8)	○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범 체계 등 마련 ※ 「디지털 교육 규범」, (가제)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안내 등 확정·배포(‘24.6) ※ 분야별 전문가, 교사·학생·학부모 등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교육 규범」과 「생성형 AI 활용 안내」를 공론화하고 현장 의견 수렴
금융 분야 AI 활용 기준 정립 금융위	○ 금융권의 AI 활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류, 오작동 등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문제 대두 ※ 금융산업은 AI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 약 3.2조원 시장 형성 전망(한국신용정보원, ‘23.5)	○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명가능한 AI 안내서 마련(‘24.6) 및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24) ※ AI 활성화를 위한 금융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AI를 활용한 채용 시 기준·원칙 정립 고용부	○ AI 기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편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직자들의 불안 상존 ※ 미국 성인 1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66%가 인공지능이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美 퓨리서치센터, ‘23)	○ 구직자, 기업 인사관계자 등 대상 AI를 활용한 채용 관련 간담회 추진(‘24.上) ○ 선진국 가이드라인 및 기업·구직자 의견을 참고하여 ‘AI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25)
군사 분야 책임있는 AI 활용방안 국방부, 외교부	○ 미국, NATO 등은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실전에 활용 중이나 한국은 준비단계 수준에 불과 ※ 제2차 REAIM(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준비기획단 발족 (‘23.12)	○ 군사분야 AI에 관한 국제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해 제2차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외교부·국방부}(‘24.9.9~10)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국토부, 경찰청	○ 자율주행차량(Lv.4)이 인간과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작동할 수 있는 우선순위 등 도로교통안전 대책 미비 ※ 임시 운행 허가 ‘16 11대 → ‘23 430대 시험운행 지구 지정 ‘21 7개 → ‘23 34개	○ 성능인증제*, 안전기준 등 제도 정비^{국토부} *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24.5) ○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내용·절차 등 제도안 (‘24.10.) 및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운행 안전 관련 법률 제정안 마련(‘24.12)^{경찰청}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도 정비	○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시장 확대에 대응 하여 핵심기술 개발 및 제도 정비 미흡 ※ 세계 해양모빌리티 시장규모 '27 583조원 예상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 운항선박법 제정('24.1) 및 하위법령 마련('24.12)
해수부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운항기반 조성
디지털·AI 의료기기 활용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 국내·외 기업이 개발 중인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데 한계** 존재 * (구글) Med-PaLM 2('23.2), (카카오브레인) 생성형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문(초안) 생성 SW ** 입출력 데이터 조합을 특정할 수 없음	○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6회 이상) 및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24.11)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 흐름도, 안전성·유효성 평가 방법 등
식약처		

⑨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주요 현황	대응 과제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 정부-민간 간의 연계·협업 미흡으로 민간 역량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한계 ※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면 전환 필요 ○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전 주기적 지원 필요 ※ 규제 발굴 및 비즈니스 구체화부터 시장진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아산나눔재단, '22.) ○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필요성 지속 증가 및 기술격차 해소 필요 ○ 선박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지며, 이에 대한 해상교통정보산업 지원 필요 ※ 향후 4년간 선박의 디지털화 비중이 약 19.5% 증가('23, KISTEP) ○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활용되지만 산업 DX 수준 및 산업 AI의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 ※ 기업 규모별, 업종별 불균형 또한 심화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정통부·행안부}('24~.) ※ 디지털플랫폼 허브 구축하고 시범서비스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혜택 알리미 Any-ID 등) 개통('24.12)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민간 SaaS 도입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추진 ※ 행정 간소화를 위한 구비서류 제로화 단계적 확대('24, 400개 → '25, 900개 → '26 1,500여개) ※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추진('24~) ○ 창업규제트리 플랫폼 구축^{중기부}('24.12) ※ 창업기업이 규제에 사전대응하지 못하여 사업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핵심 규제를 의사결정트리 형태로 체계화 ○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농림부} ※ 상용화된 민간기업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보급 지원('24.3~, '24년 20개 스마트팜 솔루션 1,300호 보급)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추진^{해수부}('24.5) ※ 디지털 선박 건·개조, 바다내비 인프라 개방,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등 조항 신설 ○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 AI 내재화^{산업부}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산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24)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24)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통신시장 환경변화 대응 및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신 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24.말) ※ 법률 목적 및 정의 조항 개정, 대형 부가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등 ※ 정책연구, 의견수렴 병행 추진
과기정통부, 방통위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	○ 부동산 등의 산업이 IT 융합 신산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통 산업 - 신산업 간 충돌 등 갈등* 지속 발생 * 리걸테크 업계-변호사 단체 간 대립, 프롭 테크 업계-중개사협회 간 대립	○ 디지털 신산업의 합법적·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며 기존산업 간 갈등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리걸테크 활용 방안 정책연구 ^{법무부} (‘24.12), 법률 플랫폼 운영 기준 마련 (‘24.12) ※ ‘부동산서비스협의체’ 운영 ^{국토부} (‘24~)
법무부, 국토부		

3

디지털 심화시대의 철저한 대비

⑩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주요 현황	대응 과제
마이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의 서비스에 대해 서류 없이 본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中 * 시범서비스(‘21.2) 후 누적 약 8.5억 건 (~’24.1)의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 우려 제기 * 개보법(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25년 시행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분야 확대 ^{행안부} (누적 120종, ~’24) ※ 공공, 금융 분야에서 나아가 가족결합할인 등 통신분야까지 확대 ○ 의료 마이데이터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진단 및 처방내역 등 제공 확대 ^{복지부} ○ 마이데이터 시행에 맞춰 비용분담 기준안 마련 및 지원 플랫폼 구축 (~’24.12) ^{개인정보위} ○ 금융 마이데이터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보호 강화 위한 제도 개선 검토 (~’24) ^{금융위}
행안부, 금융위, 복지부, 개인정보위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AI활용	○ 영상, 이미지, 대화기록 등 AI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전 세계 소비자 57%가 ‘AI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 위협을 초래’한다고 생각(IAPP, ’23년) ※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수립(개인정보위, ’23년) ※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승인(’23)	○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24.上), 투명성 확보 가이드 (’24.下) 마련 ○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체 운영 (’23.10~) ○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이드 수립 (’24.下) ○ 생체 인식정보 합리적 규율체계(안) 마련 및 입법화 추진 (~’25) ○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24.3~)
개인정보위		

⑪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황	대응 과제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	○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고치 기록* * 화석 연료로 인해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368억톤(GCP, '23) ※ 한국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23.11), EU 에너지시스템 디지털화 실행계획 등 추진	○ 디지털 탄소중립 범부처 협약체* 출범('24.1), 디지털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25) * (총괄) 탄녹위, 과기정통부 / (소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등 과기정통부 그린 디지털 전환기업 육성 국토부 수송·건물부문 탄소공간지도 개발 환경부 등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 소관부처 탄소중립 데이터 개방 등
과기정통부 등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의 일상화 ※ 세계 평균 기온이 19세기 말 이래 사상 최고치 경신(美 국립환경센터, '23)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수립('22.8)	○ 댐-하천(176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및 AI 홍수예보* 서비스 개시('24.5~) ※ (댐-하천 DT) 실시간 물관리 정보의 DT 연계·구현과 수요자별 활용방안 마련 예정 ※ (AI 홍수예보) 담당자 교육, 모의 합동 훈련 등을 통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환경부		

⑫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주요 현황	대응 과제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 AI 안전, 거버넌스 등 AI 관련 글로벌 규범 주도권 경쟁이 확대 ○ 국제사회 디지털 협력 관련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	○ AI 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개최('24.5) 등 국제사회에서 AI 규범논의 주도^{외교부} ○ 디지털 협력센터 운영 확대 추진('24년 8개→'25년 목표 11개)^{행안부} ※ 개도국 고위급 정책 관리자,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 추진과제 관련 초청 연수 과정 운영
외교부, 행안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의 디지털 소외 심화 ※ 유럽과 미주 등의 인터넷 사용률이 90%에 육박하나, 아프리카의 경우 37%에 불과(ITU, '23) ※ 한국형 디지털 모델 확산으로 개도국의 위기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추진 중	○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유·무상 원조 추진 ※ 6대 분야(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기후) 중심으로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 디지털 분야 신규 승인 목표:('24) \$10억 → ('26) \$12억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IV. 과제별 향후 일정

핵심 과제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1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 인공지능법 제정	과기정통부					
	· 고위험 영역 AI 사업자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통위					
	· AI 사고책임 연구 및 법률 개정 검토	공정위, 법무부					
	· AI 서울 정상회의	과기정통부, 외교부					
	· 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신설·운영	과기정통부, 법무부					
	· UN AI 자문기구 참여	개인정보위					
	·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의제 반영	과기정통부, 법무부					
	· AI 한계 극복 R&D('24~'27)	과기정통부					
	· 안전성 테스트 프레임워크						
	· AI 안전 전담조직 설치						
	·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운영						
	· AI 윤리·신뢰성 핵심쟁점 논의(분기별)						
2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대표 플랫폼 사업자 자발적 조치 강화 지원	방통위					
	· 자율규제 활성화 연구						
	· 딥페이크 선거운동 신속 대응체계 구축	선관위					
	·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방통위, 과기정통부					
	·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	경찰청, 과기정통부					
	· 초·중·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부					
	· 성인 대상 생애단계별 정보판별 교육	방통위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3 인공지능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AI-저작권 워킹그룹 운영	문체부					
	· AI 저작권 글로벌 논의 (WIPO, OECD 등)						
	· AI 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 AI 학습 이용대가 연구						
	· 저작권법 개정 등 정책 방향(안) 마련						
	· AI 산출물 표시 자율 도입 기업 지원	과기정통부, 문체부					
4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과기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직접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						
	· 전자정부법 개정	행안부					
	· 디지털서비스 안전 점검	과기정통부					
	· 데이터센터 위기관리 등 매뉴얼 마련·모의훈련 강화						
	· SW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 사이버 스파이더 구축						
	· EMP 방호기술 개발 및 취약성 평가기준 마련						
	· 민·관 협업체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출범						
	· 피싱 예방수사 등 관련 법령 정비	국조실					
	· 성폭력방지법 개정	여가부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삭제요청 자동통보시스템 개발						
	· 사이버 안심존 확대 보급	방통위					
	·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 사업자 지정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5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 디지털 포용법 제정 추진	과기정통부					
	· 디지털 접근성 영향평가 제도 도입						
	· 디지털 포용지도 구축						
	· 지능정보화 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						
	· 노인복지법 개정	복지부					
	· 디지털 교육 규범 마련 및 글로벌 확산	교육부					
	· 디지털 포용 국제 거버넌스 수립·운영	과기정통부					
	· 농어촌 5G 및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조기 완료						
	· 5G 음영지역 해소						
	· 노후 공공와이파이 교체						
	·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 독거노인 AI·디지털 돌봄 서비스						
	· 한글 햇살버스	교육부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접근지원	과기정통부					
	· 데이터 혜택 강화 청년 요금제 신설						
	· 청년 대상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고용부					
	· 다문화 청소년 대상 기술 고등학교 운영						
	· 다문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과기정통부					
	· ‘찾아가는 보조금24’ 활성화	행안부					
	· 서울 ‘디지털 안내사’ 확대	서울시					
	· 은행 업무(조회·입출금) 우체국 이용 확대	우정사업본부					
	· 디지털 배움터 확대	과기정통부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육부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부, 과기정통부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6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복지부					
	·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법 적극 해석 추진	과기정통부, 복지부					
	· 디지털 혁신기기 실증특례 추진						
	· 처방전 위변조 관련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복지부					
	· 개인 건강정보 관련 법·제도적 관리방안 연구						
	· 비대면 진료 이용자 편의성 관련 심층연구	복지부, 과기정통부					
	· 비대면 진료 자문단을 통한 국민 소통 추진	복지부					
7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실현 방안 논의(노·사·정, 학계 전문가, 국민)	고용부					
	· 디지털 선도기업 문화 확산	과기정통부, 고용부					
	· 업무연결 쉼 캠페인 실시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심층연구						
8 잊힐 권리 보장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	개인정보위					
	· 지우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잊힐 권리 사례 연구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일반 과제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1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개발	고용부					
	• 플랫폼 종사자 쉼터 설치 등 일터 개선 지원						
	•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및 장려금 확대						
2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교육부					
	•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및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지원						
	• 교육과정에 기반 유·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 학교 운영						
	•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및 교육 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						
3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마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방안 모색	복지부					
	• 디지털 기술 현장형 인재 양성 훈련 제공	고용부					
4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확보	•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 및 자율규제 확산·고도화 방안 마련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공정위					
	• AI 공정경쟁 촉진 정책연구	공정위					
	• AI·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구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 전자상거래법 하위규정 등 정비 및 자율규약 추진	공정위					
	• 전기통신사업법 법령 정비	방통위					
	•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과기정통부, 방통위					
	• 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법제 개정안 마련	과기정통부, 방통위					
	•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 수립	과기정통부					
	•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연구	방통위					
	• OECD 포괄적 이행체계 대응	기재부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5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	·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 계약서 마련	과기정통부					
	· 데이터 가치평가 및 취득·이용 관련 안내서 배포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안내서 배포 및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 행정조사 실시	특허청					
	·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 범위 정비 및 효율적 보호방안 검토	문체부					
	· 산업재산정보법 하위법령 제·개정	특허청					
	· 산업재산 관리, 활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위한 정책연구						
	· 데이터 귀속 등 법률관계 규율 입법 방안 연구	법무부					
	· 디지털 유산 상속관계 규율 관련 입법방안 연구	법무부					
	· 디지털 유산관련 다양한 이용자 권익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방통위					
	· 디지털 유산 성격, 관리자의 범위, 유족 권리 등 연구('26~)	개인정보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 규정(시행령, 감독규정) 마련	금융위					
	· 민사법적 법률관계 규율 방안 연구	법무부					
6 메타버스 경제 규범 정립	· 불법 음란정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					
	· 가상공간 처벌규정 및 형사 절차 상 특례 정비	법무부					
	· (가칭) 글로벌 포럼 개최	과기정통부					
	· 게임물-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 수립	과기정통부 문체부					
	· 가상공간에서 인격권 관련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법무부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7 데이터 개방 촉진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행안부					
	· 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 AI데이터 공유·개방 데이터 중개·소통창구 구축	과기정통부					
8 분야별 AI 활용 기준 및 원칙 정립	· 디지털 교육 규범 공론화	교육부					
	· (가제)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안내서 배포						
	· 설명가능한 AI 안내서 마련	금융위					
	·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 AI 활성화를 위한 금융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 AI 활용한 채용 관련 구직자, 기업 등 대상 간담회 추진	고용부					
	· AI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					
	·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2차)	외교부, 국방부					
	·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 성능인증제, 안전기준 등 정비	국토부					
	·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제도 마련	경찰청					
	· 운행 안전 관련 법률 제정안 마련						
	· 자율운항선박법 및 하위 법령 마련하여 기술개발 및 운항기반 조성	해수부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9 디지털 혁신 촉진 및 갈등 관리	· 디지털플랫폼 허브 구축 및 시범사업	과기정통부					
	· 구비서류 제로화 단계적 확대	행안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행안부, 과기정통부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 창업규제트리 플랫폼 구축	중기부					.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농식품부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추진	해수부					
	· 산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산업부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 AI 일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기정통부					
	· 통신규제체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과기정통부, 방통위					
	· 리걸테크 활용 방안 정책 연구	법무부					
	· 법률플랫폼 운영 기준 마련						
	·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운영	국토부					
10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분야 확대	행안부					
	· 의료 마이데이터 진단 및 처방내역 제공 확대	복지부					
	· 마이데이터 비용분담 기준안 마련	개인정보위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 금융마이데이터 제도 개선 ※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보호 강화	금융위					
	·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 마련	개인정보위					

과 제 명		관계기관	추진일정				
			'24 (1)	'24 (2)	'24 (3)	'24 (4)	'25
	·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 협의체 운영						
	·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 생체 인식정보 합리적 규율 체계 법제화						
	·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11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 디지털 탄소중립 범부처 협의체 출범	과기정통부					
	· 디지털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 댐-하천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 구축	환경부					
	· AI 홍수예보 서비스 개시						
12 AI·디지털 글로벌 협력 강화	· 글로벌 AI 규범 논의 주도	과기정통부, 외교부					
	·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확대	행안부					
	· 개도국 고위급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초청·연수과정 운영						
	· 개도국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유·무상 원조 확대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